2026년도 가나가와현고교생등장학급부금
(상세판: 전일・정시・통신제)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교육국

행정부 재무과 고교장학금 그룹

(2026년 8월)

1　장학급부금(shogaku kyufukin)이란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모든 고교생 등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생 등이 있는 중・저소득 세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부금**입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란 교과서비, 교재비,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과 외 활동비, 학생회비, PTA 회비,
　입학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통신비 등입니다.

2　급부 대상자

○다음 (1)~(3)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6년(레이와 8년) 7월 1일 시점에 보호자가 가나가와현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2026년 7월 1일 시점에 세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생활보호(seikatsu hogo) 세대**(생업부조(seigyo fujo) 수급 세대)
- **주민세(juminzei) 비과세 세대**(보호자 등의 주민세 소득할이 0엔)
- **연 수입 약 270~380만 엔 정도의 세대**(보호자 등의 주민세 소득할 100 ~ 105,500엔 미만)
- **연 수입 약 380~490만 엔 정도의 세대**(주민세 소득할 105,500 ~ 182,500엔 미만)

(3) 2026년 7월 1일 시점에 고교생 등이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일 것.

- "고교생 등"이란 취학지원금(shugaku shienkin), 고교생 등 신수학지원금 또는 다시 배움(마나비나오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입니다.
- "고등학교 등"이란 고등학교(별과는 제외), 중등교육학교(후기 과정), 고등전문학교(1~3학년), 전수학교・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입니다(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는 제외).

(※그 밖에 국적・재류자격(zairyu shikaku) 등의 요건도 있습니다.)

2-1　장학급부금 지급 대상 확인

2026년 7월 1일 현재 보호자가 가나가와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 살고 있는 도도부현에 문의하십시오.
※해외에 사는 경우는 대상 아님

예

2026년 7월 1일 현재 학생이 국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입니까?

아니요 → 대상 아님

예

다음 (1)~(7)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1) 일본 국적인 사람　(2) 특별영주자　(3) 영주자
(4) 일본인의 배우자 등　(5) 영주자의 배우자 등
(6) 정주자 중 앞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7) 가족체재 자격자 중 일본의 초・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일본에서 일하며 정착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아니요 → 신입생 등 2026년 4월 이후에 입학했습니까?

아니요 → 재류자격이 "유학"입니까?

예 → 대상 아님

예 → 다음 (1)~(2)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1) 2026년 7월 1일 현재 생활보호(생업부조) 수급 세대
(2) 2026년도 보호자 전원의 주민세 소득할 합산액이 0엔(비과세)인 세대

아니요 → 대상 아님

예

예

다음 (1)~(3)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1) 2026년 7월 1일 현재 생활보호(생업부조) 수급 세대
(2) 2026년도 보호자 전원의 주민세 소득할 합산액이 0엔(비과세)인 세대
(3) 2026년도 보호자 전원의 주민세 소득할 합산액이 182,500엔 미만인 세대

아니요 → 대상 아님

예

장학급부금　지급 대상

3　지급액

세대 구분	요건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①생활보호 세대	7월 1일 시점에 생업부조를 받고 있음	32,300엔	
②주민세 비과세 세대	보호자 전원의 주민세 소득할액 합계가 0엔(①은 제외)	143,700엔	50,500엔
③연수입 약 270~380만 엔 세대	보호자 전원의 주민세 소득할액 합계가 105,500엔 미만(①②는 제외)	47,900엔	16,830엔
④연 수입 약 380~490만 엔 세대	보호자 전원의 주민세 소득할액 합계가 182,500엔 미만(①~③은 제외)	35,930엔	12,630엔

- 해외 근무 등으로 일본에 주소가 없어서 비과세인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고교생 등이 아동복지시설(모자생활지원시설은 제외)에 입소해 있거나 위탁부모에게 양육되고 있어, 견학여행비 또는 특별육성비를 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 기간・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8월 25일(화)~2026년 12월 15일(화)

＜제출처＞

2026년 7월 1일에 재학 중인(재학했던) 학교의 사무실(jimushitsu)

・7월 2일 이후에 퇴학・전학한 경우에도 7월 1일 시점에 재학했던 학교에 신청하십시오.
・서류 심사가 있으므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 가나가와현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재학했던) 고등학생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신청 시스템(e-kanagawa)으로 신청하십시오.

・전자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 신청서(shinseisho)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학교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신청 방법은 현 재무과 웹사이트(https://www.pref.kanagawa.jp/docs/en7/cnt/f531013/　)에 있습니다.

5 지급 방법 · 지급 시기

< 지급 방법 >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에 미납이 있는 경우는, 장학급부금의 급부액을 미납액에 충당합니다.**

-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에 미납이 없는지 학교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2~3개월 후 말경** 예정

- 신청이 몰리면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신청에 필요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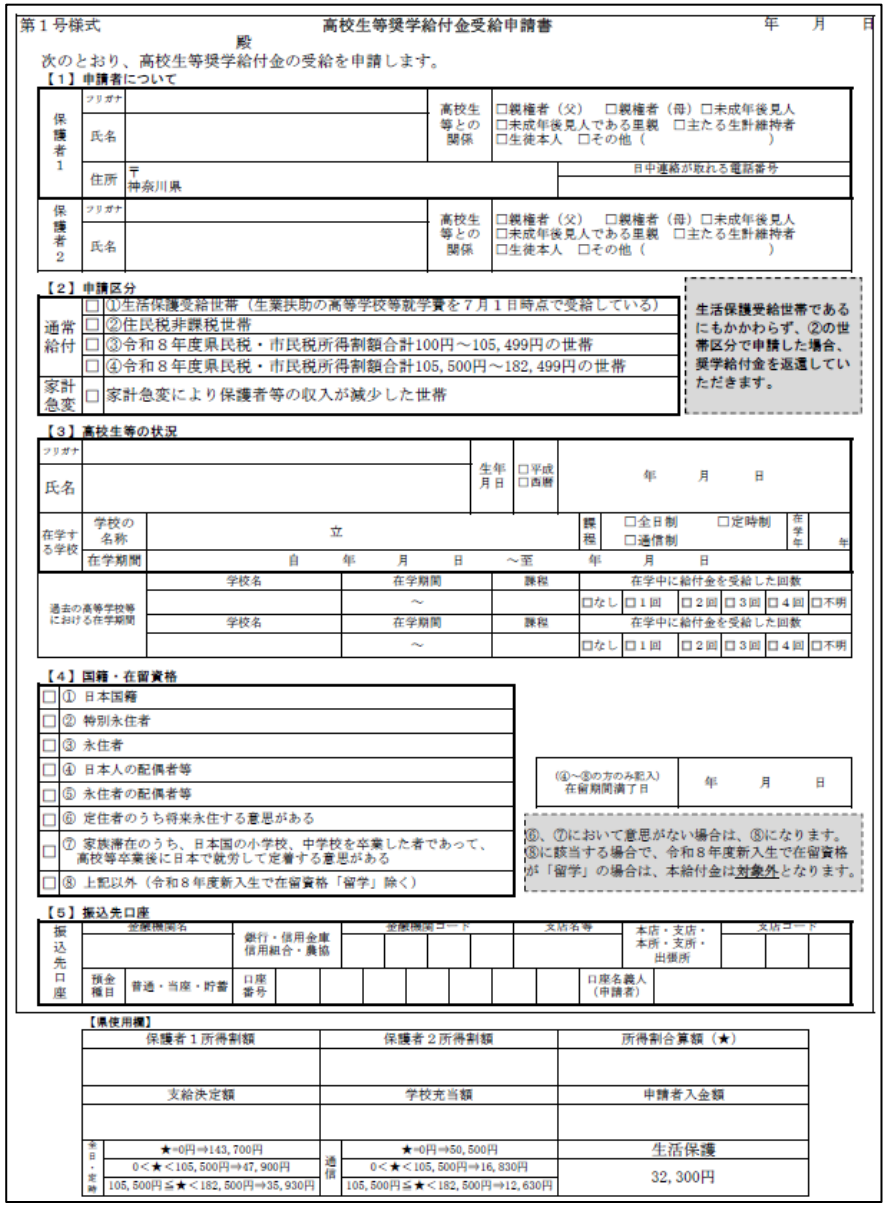
각 신청 구분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 구분	신청서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과세증명서 등	국적 등 확인 서류	통장 등의 사본	위임장
생활보호 세대	●	●	-	●	●	▲（※）
과세・비과세 세대	●	-	●	●	●	▲（※）
제출서류에 관한 상세 설명	앞면: P9 뒷면: P10	P11	P12	P13	P14	P15

※　위임장(ininjo)은 **가나가와현립학교** **이외의 국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등이,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에 **미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현립고등학교에는 원칙적으로 전자신청 시스템(e-kanagawa)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이외의 첨부 서류는 모두 사진이나 스캔 이미지로 전자신청 시스템에 첨부해 주십시오.

6-1-1　신청서(앞면)(전원 제출)



第１号様式　　高校生等奨学給付金受給申請書　　年　月　日

殿

次のとおり、高校生等奨学給付金の受給を申請します。

【１】申請者について

保護者１	フリガナ / 氏名		高校生等との関係	□親権者（父）　□親権者（母）□未成年後見人 □未成年後見人である里親　□主たる生計維持者 □生徒本人　□その他（　　）
	住所	〒 神奈川県	日中連絡が取れる電話番号	
保護者２	フリガナ / 氏名		高校生等との関係	□親権者（父）　□親権者（母）□未成年後見人 □未成年後見人である里親　□主たる生計維持者 □生徒本人　□その他（　　）

【２】申請区分

通常給付	□	①生活保護受給世帯（生業扶助の高等学校等就学費を７月１日時点で受給している）
	□	②住民税非課税世帯
	□	③令和８年度県民税・市民税所得割額合計100円～105,499円の世帯
	□	④令和８年度県民税・市民税所得割額合計105,500円～182,499円の世帯
家計急変	□	家計急変により保護者等の収入が減少した世帯

生活保護受給世帯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②の世帯区分で申請した場合、奨学給付金を返還していただきます。

【３】高校生等の状況

フリガナ / 氏名		生年月日	□平成 □西暦	年　月　日
在学する学校	学校の名称	立	課程	□全日制　□定時制 □通信制
	在学期間	自　年　月　日　～至　年　月　日	在学年	年

過去の高等学校等における在学期間

学校名	在学期間	課程	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
	～		□なし　□１回　□２回　□３回　□４回　□不明
学校名	在学期間	課程	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
	～		□なし　□１回　□２回　□３回　□４回　□不明

【４】国籍・在留資格

□	① 日本国籍
□	② 特別永住者
□	③ 永住者
□	④ 日本人の配偶者等
□	⑤ 永住者の配偶者等
□	⑥ 定住者のうち将来永住する意思がある
□	⑦ 家族滞在のうち、日本国の小学校、中学校を卒業した者であって、高校等卒業後に日本で就労して定着する意思がある
□	⑧ 上記以外（令和８年度新入生で在留資格「留学」除く）

（④～⑧の方のみ記入）在留期間満了日　年　月　日

⑥、⑦において意思がない場合は、⑧になります。⑧に該当する場合で、令和８年度新入生で在留資格が「留学」の場合は、本給付金は対象外となります。

【５】振込先口座

振込先口座	金融機関名	銀行・信用金庫 信用組合・農協	金融機関コード	支店名等	本店・支店・ 本所・支所・ 出張所	支店コード
	預金種目	普通・当座・貯蓄	口座番号		口座名義人（申請者）	

【県使用欄】

保護者１所得割額	保護者２所得割額	所得割合算額（★）
支給決定額	**学校充当額**	**申請者入金額**

全日・定時	★=0円⇒143,700円	通信	★=0円⇒50,500円	生活保護
	0＜★＜105,500円⇒47,900円		0＜★＜105,500円⇒16,830円	32,300円
	105,500円≦★＜182,500円⇒35,930円		105,500円≦★＜182,500円⇒12,630円	

【1】신청자에 대하여

・고교생 등의 보호자 등의 이름, 주소, 고교생 등과의 관계를 기입하십시오.

【2】신청 구분

・신청하는 세대 구분에 체크(☑)하십시오.

【3】고교생 등의 상황

・신청 대상인 고교생 등의 이름, 생년월일, 재적 학교 등을 기입하십시오.

【4】국적・재류자격

・고교생 등이 해당하는 국적・재류자격에 체크(☑)하십시오.

・④~⑧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의 "재류기간 만료일"도 기입하십시오.

【5】입금 계좌

・장학급부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6-1-2 신청서(뒷면)(전원 제출)



【6】申請書とともに提出する書類。
○生業扶助を受けていることがわかる書類もしくは課税状況がわかる書類について

所得状況	提出書類	備考
□ 生活保護世帯	生活保護受給証明書	福祉事務所が７月１日以降に発行した生活保護受給証明書
□ 生活保護世帯以外	次の者の（非）課税証明書等	
	□ ①親権者（両親）２名	生徒が未成年（18歳未満）で、親権者が２人存在する場合 ※単身赴任の場合も２名分必要
	□ ②親権者１名	離婚、死別等により親権者が１名の場合 親権者は２名いるが、ＤＶや養育放棄、失踪等の事情によりやむを得ず、一方の親権者分を提出できない場合　等
	□ ③未成年後見人	親権者が存在せず、未成年後見人が選任されている場合 ※複数人選任されている場合は全員分
	□ ④主たる生計維持者２名	生徒が在学中に成人した場合で、成人直前の未成年の時点から申請の時点まで生計を維持する者に変更がない場合
	□ ⑤主たる生計維持者１名	生徒が未成年だが、親権者又は未成年後見人が存在しない場合 入学時点で生徒が成人であったが、主たる生計維持者が存在する場合 生徒が成人であり、未成年の時点で親権者が１人だった場合 生徒が成人であり、未成年の時点で親権者又は未成年後見人が存在しなかった場合 等
	□ ⑥生徒本人	親権者、未成年後見人又は主たる生計維持者のいずれも存在しない場合であり、成人に達している場合　等

次の理由により、上表の書類を提出しません。
□ 所得確認の対象が生徒本人（親権者、未成年後見人又は主たる生計維持者のいずれも存在しない場合）であるが、未成年で道府県民税所得割・市町村民税所得割が課されるだけの収入を得ていないため

○国籍・在留資格等が確認できる書類について

国籍/在留資格	提出書類		備考
□ 日本国籍	住民票の写し（原本）		
□ 特別永住者	・特別永住者証明書の写し ・住民票の写し（原本）	のいずれか	・特別永住者証明書をコピーしたもの ・住民票の写しは国籍・在留資格等の記載があるもの
□ 永住者 □ 日本人の配偶者 □ 永住者の配偶者 □ 定住者 □ 留学（新入生除く）	・在留カードの写し ・住民票の写し（原本）	のいずれか	・在留カードはコピーしたもの ・住民票の写しは国籍・在留資格・在留期間等の記載があるもの ※永住者については、住民票の写しに在留期間の記載は不要です。 ※定住者は、将来永住する意思がある者が対象です。
□ 家族滞在	・在留カードの写し ・住民票の写し（原本） 及び、以下のいずれか一つ 日本の小学校及び中学校の ・卒業証書の写し ・卒業証明書の原本	のいずれか のいずれか	・在留カードはコピーしたもの ・住民票の写しは国籍・在留資格・在留期間等の記載があるもの ※小学校、中学校とは、特別支援学校（小・中）又は義務教育学校の前後期及び中等教育学校の前期課程も含みます。 ※高校等卒業後、日本で就労して在留する意思がある者が対象です。

次の事項に同意する場合は、□にチェックを付けてください。
□ 高校生等就学支援金等の申請で提出した課税証明書や在留カードの写し等を使用して高校生等奨学給付金の支給審査を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7】誓約・委任

次のことを確認し、誓約（委任）します。　　申請者氏名

・申請書の記載内容は事実に相違ありません。また、この申請書に虚偽の記載があった場合は、神奈川県教育委員会の求めに従いその全額を即時返還します。
・**神奈川県以外の都道府県に高校生等奨学給付金の申請は行っておりません。**
・この申請の対象となる高校生等は、７月１日時点※、児童福祉法による児童入所施設措置費等（見学旅行費又は特別育成費（母子生活支援施設の高校生等を除く。））の支弁対象ではありません。※家計急変申請は事由発生日の属する翌月の初日
・**（非課税世帯のみ）７月１日時点で生活保護（生業扶助（高等学校等就学費））を受けていません。**
・**（申請者が主たる生計維持者の場合のみ）**私と高校生等本人は、健康保険法等における扶養者と被扶養者の関係と同等の関係にあります。
・授業料以外に学校へ納付する納付金等に未済があるときは、私が支給を受ける高校生等奨学給付金をその未済に充てることについて学校長に委任します。
（注）神奈川県立学校以外の学校では、上記の下線部を次のように変更して使用。

【学校使用欄】
学校受付印

次のことについて確認しました。
・□　　年７月１日現在、　本校の（□全日制 □定時制 □通信制）課程に在学します。
・（□就学支援金 □学び直し支援金）の受給資格を有する（補助要件を満たす）者です。
・納付金等について、（□未済なし / □未済あり（　　円）

学校の名称　　学校長の氏名　　職印

学校の電話番号

【6】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생업부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과세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 해당하는 소득 상황에 체크(☑)하십시오.
- 비고를 참조하여 제출할 서류에 체크(☑)하십시오.

○국적・재류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 해당하는 국적/재류자격에 체크(☑)하십시오.

【취학지원금과의 서류 병용에 대하여】

- 고교생등취학지원금 신청 때 제출한 서류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 ☑하십시오.

【7】서약・위임

-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신청자 이름(보호자 등의 이름)을 기입하고, 서약・위임을 해 주십시오.

6-2　생활보호 수급증명서(해당자만 제출)

○**2026년 7월 1일** 시점에 **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

① 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 수급증명서(seigyo fujo jukyu shomeisho)(제2호 양식)

※　학교 또는 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복지사무소(fukushi jimusho)에서 증명을 받으십시오.

② 복지사무소가 발행한, 생업부조(고등학교등취학비)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보호 수급증명서(seikatsu hogo jukyu shomeisho)

6-3　과세증명서 등(해당자만 제출)

○2026년도 도부현민세 소득할액과 시정촌민세 소득할액의 합산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하나 (**보호자 전원분을** 제출)

①2026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비)과세증명서((hi)kazei shomeisho)

※시구정촌 사무소 창구 등에서 발급받으십시오.

②2026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특별징수세액통지서

※회사원, 공무원 등은 6월경 근무처에서 배부됐습니다. (tokubetsu choshu zeigaku tsuchisho)

③2026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세액결정・납세통지서

※자영업자 등은 6월경 시정촌에서 송부됐습니다. (zeigaku kettei / nozei tsuchisho)

6-4 국적 등 확인 서류(전원 제출)

고교생 등의 국적・재류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보호자의 국적・재류자격 등이 아닙니다.

국적・재류자격	제출 서류	비고
일본 국적	주민표 사본(juminhyo no utsushi)(발급받은 원본. 복사본 불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표 사본을 제출
특별영주자	・특별영주자증명서 사본 ・주민표 사본(원본) } 중 하나 ※국적・재류자격・재류기간 등이 기재된 것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표 사본을 제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유학(신입생 제외)	・재류카드 사본 ・주민표 사본(원본) } 중 하나 ※국적・재류자격・재류기간 등이 기재된 것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표 사본을 제출 ・정주자는 앞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 대상
가족체재	・재류카드 사본 ・주민표 사본(원본) } 중 하나 ※국적・재류자격・재류기간 등이 기재된 것 위의 서류 및 ・일본 초등학교・중학교의 졸업증서 사본 ・일본 초등학교・중학교의 졸업증명서 } 중 하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표 사본을 제출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특별지원학교(초・중), 의무교육학교의 전・후기 과정, 중등교육학교의 전기 과정도 포함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일본에서 일하며 체류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대상

6-5　통장 사본 등(전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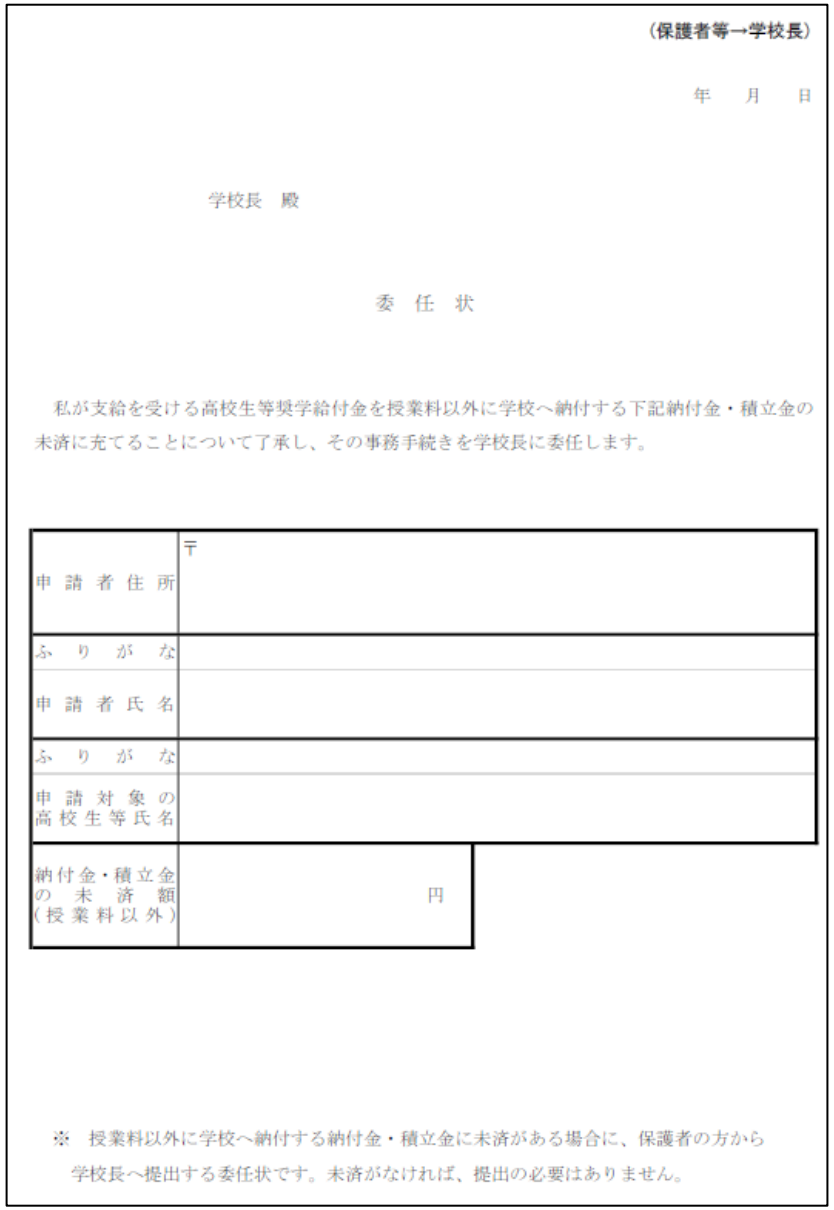
○통장 사본(tsucho no utsushi) 등 **계좌 명의를 알 수 있는** 서류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지정해 주십시오.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해 주십시오.

6-6　위임장(가나가와현립학교 이외의 국공립고등학교 고교생 등만 제출)



（保護者等→学校長）

年　月　日

学校長　殿

委　任　状

私が支給を受ける高校生等奨学給付金を授業料以外に学校へ納付する下記納付金・積立金の未済に充てることについて了承し、その事務手続きを学校長に委任します。

申請者住所	〒
ふりがな	
申請者氏名	
ふりがな	
申請対象の高校生等氏名	
納付金・積立金の未済額（授業料以外）	円

※　授業料以外に学校へ納付する納付金・積立金に未済がある場合に、保護者の方から学校長へ提出する委任状です。未済がなければ、提出の必要はありません。

○위임장은

・**가나가와현립학교 이외의 국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등이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에 **미납이 있는** 경우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나가와현립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보호자 등)의 주소, 이름, 신청 대상인 고교생 등의 이름,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미납액을 기입하십시오.

7 기타

◯ **재해로 교복을 잃거나 훼손되어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의 추가급부에 대하여**

장학급부금을 받는 세대로, 학교가 착용을 의무화한 교복을 재해 등으로 잃거나 훼손되어 다시 교복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재무과에 문의하십시오.

8　문의처

○자세한 안내와 신청 서류는 현 홈페이지 또는 학교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 홈페이지: https://www.pref.kanagawa.jp/docs/en7/cnt/f531013/

○문의처: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사무실　　또는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재무과 고교장학금 그룹

전화　045-210-8251(직통)